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6호 2020. 4. 13.(월)

조 례

-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 2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5

예 규

-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10

기 타

- 목포시 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 20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제35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4월 1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7 호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8.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12.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3.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5. 그 밖에 다른법에 의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교육비

4. 월동대책비

5. 명절, 연말 위문금품

6.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7. 제2조제1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4월 1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8 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1(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한도액 월 1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중 제5항을 신설한다.

제9조(지원신청 절차)

⑤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9조 제1항중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지원을 위한**” 을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 1 <신 설>	제6조의 1(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한도액 월1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절차) ① ~ ④ (생략)	제9조(지원신청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 ⑤ 조례 제6조의 1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9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	제19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

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의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

[별지 제3호서식]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현)상시근로자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구 분	1월분		2월분	3월분
합 계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기 타 사 항				
☐ 본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증명원)1부,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확인서 1부,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목포시내 사업장 소상공인 여부 : 여(), 부()				
② 매출액 10% 감소 여부 : 여(), 부()				
③ 사업장 운영 증빙 여부 : 여(), 부()				
④ 증빙서류 제출(고지서) 여부 : 여(), 부()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 제외 사유 :				

목포시 예규 제23호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20년 4월 1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포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 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목포시의료원 공고 제2020- 11호

목포시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지방의료원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목포시의료원 2019년 세입 · 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 원 구

□ 2019년 세입 · 세출 결산

(1) 현금예금 결산액은

수 입	31,967,678,879원
지 출	28,189,772,266원
차기이월액은	3,777,906,613원이다.

(2) 재정상태는

자 산	10,125,618,977원
부 채	8,195,466,809원
자 본	1,930,152,168원이다.

(3) 손익은

수 익	24,589,403,395원
비 용	24,222,493,609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36,609,505원
당기순이익	403,519,291원이다.

(4) 지급능력

당좌자산	5,437,931,553원
유동부채	2,589,928,532원
차감이월액은	2,848,003,021원이다.

가. 재무상태표

제36(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35(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목포시의료원

(단위:원)

과 목	제36(당)기	제35(전기)	차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5,699,735,191	5,839,657,836	(-)139,922,645
(1) 당좌자산	5,437,931,553	5,630,923,767	(-)192,992,214
1) 현금및현금성자산	3,777,906,613	2,479,845,646	1,298,060,967
(국고보조금)	(-)1,352,540,681	(-)789,667,753	(-)562,872,928
2) 의료미수금	3,030,303,341	3,991,537,795	(-)961,234,454
(의료미수금대손충당금)	(-)34,533,845	(-)67,242,553	32,708,708
3) 기타미수금	5,928,000	6,774,000	(-)846,000
4) 선급비용	2,348,145	2,350,922	(-)2,777
5) 선급제세	8,519,980	7,325,710	1,194,270
(2) 재고자산	261,803,638	208,734,069	53,069,569
1) 약 품	176,488,428	127,828,841	48,659,587
2) 진료재료	65,635,192	55,393,230	10,241,962
3) 급식재료	1,813,000	3,973,600	(-)2,160,600
4) 저장품	-	5,000,000	(-)5,000,000
5) 의료부대물품	17,867,018	16,538,398	1,328,620
II. 비유동자산	4,425,883,786	3,233,389,884	1,192,493,902
(1) 투자자산	656,972,000	751,531,000	(-)94,559,000
1) 장기대여금	100,000,000	260,000,000	(-)160,000,000
2) 보증금	556,972,000	491,531,000	65,441,000
(2) 유형자산	3,768,911,786	2,481,858,884	1,287,052,902
1) 토지	3,375,949,966	2,420,168,776	955,781,190
(국고보조금)	(-)1,280,000,000	(-)1,280,000,000	-
2) 건물	24,050,925,057	24,050,925,057	-
(국고보조금)	(-)16,387,881,939	(-)16,951,667,741	563,785,802
(감가상각누계액)	(-)7,164,554,013	(-)6,555,792,752	(-)608,761,261
3) 구축물	427,316,970	427,316,970	-
(국고보조금)	(-)86,043,055	(-)98,435,968	12,392,913
(감가상각누계액)	(-)167,120,540	(-)143,100,485	(-)24,020,055

과 목	제36(당기)	제35(전기)	차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4) 기계장치	880,820,700	880,820,700	-
(국고보조금)	(-)57,723,129	(-)111,069,081	53,345,952
(감가상각누계액)	(-)786,708,618	(-)719,007,424	(-)67,701,194
5) 의료장비	7,890,987,673	6,765,291,255	1,125,696,418
(국고보조금)	(-)1,821,496,964	(-)1,597,152,723	(-)224,344,241
(감가상각누계액)	(-)5,448,987,776	(-)4,858,025,453	(-)590,962,323
6) 차량운반구	309,626,076	260,521,653	49,104,423
(국고보조금)	(-)2,000	(-)2,000	-
(감가상각누계액)	(-)241,007,902	(-)260,516,653	19,508,751
7) 공기구비품	2,397,050,931	2,530,899,130	(-)133,848,199
(국고보조금)	(-)345,671,338	(-)463,300,515	117,629,177
(감가상각누계액)	(-)1,776,568,313	(-)1,816,013,862	39,445,549
8) 건설중인자산	347,467,278		347,467,278
(국고보조금)	(-)347,467,278		(-)347,467,278
자 산 총 계	10,125,618,977	9,073,047,720	1,052,571,257
부 채			
I. 유동부채	2,589,928,532	3,197,485,856	(-)607,557,324
1) 매입채무	1,684,213,047	1,571,882,390	112,330,657
2) 미지급금	35,445,200	2,818,900	32,626,300
3) 예수금	267,944,880	205,584,890	62,359,990
4) 미지급비용	282,325,405	264,050,829	18,274,576
5) 예수보증금	10,000,000	10,000,000	-
6) 미지급법인세	-	833,148,847	(-)833,148,847
7) 유동성장기부채	310,000,000	310,000,000	-
II. 비유동부채	5,516,876,003	5,072,318,995	444,557,008
1) 지역개발기금	2,170,000,000	2,480,000,000	(-)310,000,000
2) 퇴직급여충당부채	6,845,707,975	5,886,534,343	959,173,632
(퇴직보험예치금)	(-)3,498,831,972	(-)3,294,215,348	(-)204,616,624
III. 의료발전준비금	88,662,274	125,271,779	(-)36,609,505
부 채 합 계	8,195,466,809	8,395,076,630	(-)199,609,821
자 본			
I. 기본금(기본재산)	977,671,329	977,671,329	-
1. 법인기본금	977,671,329	977,671,329	-
II. 결손금	952,480,839	(-)299,700,239	1,252,181,078
1. 차기이월결손금	(-)10,404,770,817	(-)10,690,907,102	(-)286,136,285
2. 전기오류수정손실	10,105,070,578	10,105,070,578	-
3. 회계변경의누적효과	848,661,787	-	848,661,787
4. 당기순이익	403,519,291	286,136,285	117,383,006
자 본 총 계	1,930,152,168	677,971,090	1,252,181,078
부채 와 자본 총계	10,125,618,977	9,073,047,720	1,052,571,257

나. 손익계산서

제36(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5(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시의료원

(단위:원)

과 목	36(당)기	제35(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I. 의료수익	23,450,971,709	20,818,419,414	2,632,552,295
1. 입원수익	17,864,519,218	15,484,900,305	2,379,618,913
2. 외래수익	4,640,341,561	4,355,528,255	284,813,306
3. 기타의료수익	946,110,930	977,990,854	(-)31,879,924
- 건강진단수익	771,799,970	792,391,454	(-)20,591,484
- 직원급식수익	95,644,630	99,501,200	(-)3,856,570
- 제증명수익	77,047,110	84,821,900	(-)7,774,790
- 구급차운영수익	1,619,220	1,276,300	342,920
II. 의료비용	23,705,182,448	21,151,931,016	2,553,251,432
(1) 인건비	14,304,849,802	13,158,053,466	1,146,796,336
1. 급여	12,474,727,800	11,453,137,630	1,021,590,170
2. 제수당	186,802,970	185,043,700	1,759,270
3. 퇴직급여	1,643,319,032	1,519,872,136	123,446,896
(2) 재료비	5,046,888,764	4,477,029,036	569,859,728
1.약품비	1,331,622,633	1,316,160,212	15,462,421
2. 진료재료비	2,997,201,006	2,428,990,170	568,210,836
3. 급식재료비	718,065,125	731,878,654	(-)13,813,529
(3) 관리운영비	4,353,443,882	3,516,848,514	836,595,368
1. 복리후생비	1,434,412,240	1,073,936,460	360,475,780
2. 여비교통비	26,141,651	31,528,943	(-)5,387,292
3. 통신비	25,924,450	24,546,590	1,377,860
4. 전기수도료	532,268,140	544,383,190	(-)12,115,050
5. 세금과공과	161,518,010	139,812,270	21,705,740
6. 보험료	4,499,010	4,917,205	(-)418,195
7. 환경관리비	50,476,790	49,271,680	1,205,110
8. 지급임차료	41,669,390	23,821,460	17,847,930
9. 지급수수료	140,495,836	111,807,222	28,688,614
10. 수선비	443,682,568	262,177,706	181,504,862
11. 차량유지비	17,199,966	21,266,950	(-)4,066,984
12. 교육훈련비	21,343,600	25,095,340	(-)3,751,740
13. 도서인쇄비	6,919,110	6,410,290	508,820
14. 접대비	24,845,380	26,236,710	(-)1,391,330

과 목	36(당)기	제35(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15. 행사비	846,300	2,306,050	(-)1,459,750
16. 연료비	58,039,090	55,661,190	2,377,900
17. 의료사회사업비	118,385,268	122,027,285	(-)3,642,017
18. 소모품비	93,941,085	57,830,410	36,110,675
19. 감가상각비	360,300,241	294,511,925	65,788,316
20. 광고선전비	11,948,360	15,570,800	(-)3,622,440
21. 대손상각비	19,167,506	46,606,326	(-)27,438,820
22. 피복침구비	36,989,750	3,181,000	33,808,750
23. 외주용역비	210,847,861	195,071,942	15,775,919
24. 잡비	1,384,120	1,780,950	(-)396,830
25. 의료분쟁비용	157,000,000	20,000,000	137,000,000
26. 기타관리비	353,198,160	357,088,620	(-)3,890,460
Ⅲ. 의료이익(손실)	(-)254,210,739	(-)333,511,602	79,300,863
Ⅳ. 의료외수익	1,138,431,686	912,025,003	226,406,683
1. 의료부대수익	273,875,640	253,597,750	20,277,890
2. 임대료수익	37,620,000	34,200,000	3,420,000
3. 수탁사업수익	216,000,000	103,000,000	113,000,000
4. 이자수익	91,799,408	80,305,660	11,493,748
5. 유형자산처분이익	34,512,000	15,622,500	18,889,500
6. 기부금수익	303,588,000	302,104,528	1,483,472
7. 잡이익	181,036,638	123,194,565	57,842,073
Ⅴ. 의료외비용	517,311,161	328,986,621	188,324,540
1. 의료부대비용	172,774,000	138,219,544	34,554,456
2. 수탁진료사업비용	216,000,000	103,000,000	113,000,000
3. 이자비용	76,693,152	85,993,150	(-)9,299,998
4. 유형자산처분손실	23,000	13,000	10,000
5. 잡손실	51,821,009	1,760,927	50,060,082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366,909,786	249,526,780	117,383,006
Ⅶ. 법인세비용			
Ⅷ.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	366,909,786	249,526,780	117,383,006
X.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36,609,505	36,609,505	-
XI. 당기순이익(손실)	403,519,291	286,136,285	117,383,006

※ 기타사항 : 상기에 공표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